



www.kci.go.kr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로·도서 인식

박인호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울릉도 인삼 사건과 『동국문헌비고』의 편찬
- III.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
- IV.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해로·도서 인식
- V. 『증정문헌비고』 「조빙고」와 「병고」 변금조의
편찬
- VI. 맺음말

1. 머리말

영조 때 재능이 있던 많은 관료들이 왕의 명에 따라 우리나라 전장제도의 각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백과전서인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동국문헌비고』는 비록 사전의 형태이나 각 분야별로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편찬하였으므로 영조 대의 문화적 역량을 대표한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집필되어 일종의 분류사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주제에 대해 정밀하게 사료적 가치와 사료 선택에서 보이는 인식을 검증한다면 영조 대의 사상적 동향을 파악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국문헌비고』의 여러 분야 가운데 「여지고」는 역사적 변천을 다룬 역대국계, 고려 이전과 조선 각 지방 군현의 연혁을 다룬 군현연혁, 지역의 산과 강을 다룬 산천, 관방 시설과 해상 방어와 해상통로를 다룬 성곽, 해방, 해로를 두고 있다. 「여지고」의 역대국계는 강역의 변화에 대한 측면에서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여지고」의 군현연혁, 산천, 해방, 해로 등을 통해 영토 인식과 해양 인식, 특히 해로와 도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국문헌비고』는 영조의 명에 의해 편찬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간행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정조의 명에 의해 이만운은 혼자 힘으로 『동국문헌비고』의 수정본인 『증정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게다가 『증정문헌비고』는 『동국문헌비고』에 비해 양에서 거의 배나 확충되었다. 『동국문헌비고』와 『증정문헌비고』를 비교하면서 검토한다면 영조와 정조 대 사이의 변화하는 사상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국문헌비고』는 주로 국내의 사정을 다루어 새로이 등장하는 해외 사정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한 반성에서 『증정문헌비고』

* 논문 투고일: 2022.10.12, 심사 완료일: 2022.11.15, 게재 확정일: 2022.11.16.

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교섭과 관련된 「조빙고」와 국경 경계에 대한 「병고」 변금조가 추가되었다. 여기서는 추가된 「조빙고」와 변금조를 통해 『동국문헌비고』에서 보인 해로와 도서 인식이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던 시기의 위기의식과 책의 편찬에 반영된 영토의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정문헌비고』를 통해 영·정조 대 해로와 도서에 대한 인식의 변모와 위기의식의 심화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울릉도 인삼 사건과 『동국문헌비고』의 편찬

1. 울릉도 인삼 사건¹⁾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기 전 청 건륭제의 동순(東巡)이 4차례 이루어지면서 조선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었다.²⁾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울릉도(鬱陵島)에서 산출되었던 인삼과 관련된 문제는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³⁾ 조선 후기에 국내 인삼 값이 많이 뛰자 북경에서 호삼(胡蔘)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그것을 진짜 인삼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⁴⁾ 국내에서 산출되는 인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다. 당시 울릉도에서 인삼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함부로 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조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1 울릉도 인삼 사건과 『동국문헌비고』의 편찬에 대해서는 박인호, 1996,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문화사, 24-37쪽 참조.

2 박인호, 2021, 「순안 안정복의 북방 인식」, 『한국실학연구』 42, 211-214쪽.

3 『頤齋亂藁』 권14, 庚寅 1770년 1월 16일. “又(鄭存謙-인용자)曰安留意於東國文獻否 國家初因鬱陵島蔘貨之說 命修疆域事實 未稍漸成張大 今則上自檀箕下至今日 凡係邦國大事 無不編輯(下略)”.

4 『英祖實錄』 권113, 영조 45년 11월 庚子(『朝鮮王朝實錄』 44-338 나).

이 몰래 들어가 캐어 나오곤 하였다.

1769년(영조 45) 10월 14일 영의정이었던 홍봉한(洪鳳漢)은 울릉도의 인삼
건으로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리었다.

영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울릉도에서는 인삼이 산
출되는데 장사치들이 몰래 들어가서 캔다고 합니다. 왜인들이 만일 알게
되면 뽕나무를 두고 싸우다가 모두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길까 두
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간청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문헌이 부족하여
지금 울릉도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고증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와 관련된 문헌들을 널리 모아서 이로써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나라들과
화친하는 문건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왕이 허락하였다.⁵

즉 홍봉한은 울릉도에서 인삼이 산출되는 것을 왜인들이 알게 될 경우
분쟁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울릉도에 대한 문서들을 정리하여 향후 외교
적 문제에 대비할 것을 아뢰었으며, 영조도 이를 허락하였다. 숙종 대 안용
복(安用福) 사건 이후 울릉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볼 수 있다.

영조는 정존겸(鄭存謙), 이최중(李最中)에게 문건 모으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홍봉한의 천거로 원인손(元仁孫), 채제공(蔡濟恭)을 추가하였다.⁶ 그
리고 10월 17일에는 홍봉한이 구윤명(具允明)을 천거하여 허락하였다.⁷
1769년 10월 19일에는 원인손에게 삼척영장을 지낸 사람 가운데 사물에
밝은 사람을 보내어 울릉도의 산봉우리, 경치, 물산 등을 그림으로 그려 들
여오라고 지시하였다.⁸ 10월 25일에는 비변사에 정식으로 국(局)을 설치하

5 『英祖實錄』 권113, 영조 45년 10월 壬戌(『朝鮮王朝實錄』 44-334 라~335 가). “領議政洪鳳漢奏曰 閩鬱陵
島產人蔘 商賈潛入採之 倭人若知之 恐有爭桑之患矣 仍請曰 我國文獻不足 今於鬱陵島事 無所考證 自
今博採前後文蹟 以爲事大交隣文字好矣 上允之”.

6 『承政院日記』 1297책, 영조 45년 10월 14일 임술(『승정원일기』 72-565 바~566 가).

7 『備邊司謄錄』 153책, 영조 45년 10월 18일(『備邊司謄錄』 14, 國史編纂委員會, 1960, 873 가).

8 『英祖實錄』 권113, 영조 45년 10월 甲子(『朝鮮王朝實錄』 44-335 가). “命提調元仁孫 與曾經三陟營將解
事者 圖畫鬱陵島峰巒形勝物產以入”.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외 · 도서 인식

고 당상으로 이최중 외 여러 사람과 낭청으로 조준(趙琿), 김상묵(金相默), 신경준(申景濬)을 정하였다.⁹ 팔도의 산천과 도리의 원근을 다루어 『여지승람』과 같이 하되 책명은 잠정적으로 ‘강역지(疆域志)’로 정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편찬 작업은 그다지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울릉도의 인삼을 몰래 캐어 팔다가 관청에 발각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1769년 11월에도 울릉도의 인삼이 육지로 유출되어 관청에 고발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지방관이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장계가 올라오자 삼척부사 서로 수를 신문하기도 하였다.¹⁰ 12월 9일에는 울릉도의 인삼 채취에 관한 건으로 강원도감사가 교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강원감사였던 홍명한(洪名漢)은 삼척영장이었던 홍우보(洪雨輔)와 함께 울릉도 인삼을 사적으로 밀매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¹¹ 이 사건에 홍명한이 관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뒤에 밝혀지지만¹² 이때 강원감사가 홍명한에서 서명선(徐命善)으로 교체되었다. 울릉도 인삼과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기존의 ‘강역지’ 편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2. 『동국문헌비고』의 편찬¹³

1769년(영조 45) 12월 24일 구윤명이 10월에 시작하였던 ‘강역지’ 편찬 사업을 지속할 것을 청하였다. 영조는 우리나라의 균역(均役)과 준천(潛川)과 같

9 『頤齋亂藁』 권13, 己丑 1769년 10월 25일. “聞洪領相 以疆域志修輯入啓 設局於備邊司 堂上則李最中諸人 郎廳則趙琿金相默申景濬諸人也”.

10 『英祖實錄』 권113, 영조 45년 11월 丁未(『朝鮮王朝實錄』 44-340 가). “正言李淵(中略) 又啓 鬱陵島地近倭境 故物產之禁其私取者 法意甚嚴 而近聞本島蔘貨 通行於傍邑 多有現發屬公者云 地方官之朦然不察 極爲該然 請三陟府使徐魯修 拿問嚴處 從之”.

11 『英祖實錄』 권113, 영조 45년 12월 丁巳(『朝鮮王朝實錄』 44-341 가나).

12 『承政院日記』 1300책, 영조 46년 1월 13일 辛卯(『승정원일기』 72-741 다~742 가).

13 『증정문헌비고』와 『증보문헌비고』를 포함한 문헌비고류의 편찬 과정은 박인호, 1996, 앞의 책, 제1장 문헌비고의 편찬, 23-73쪽 참조.

은 사항도 같이 기록하도록 하고, 또한 ‘강역지’라는 이름도 조잡하므로 ‘여지편람’으로 개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윤명, 홍봉한의 추천으로 신경준, 홍찬해(洪縉海) 등이 추가로 이 일을 담당하였다.¹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강역지’의 형태는 『여지승람』 중에서 강역, 관방, 산천, 도리의 내용을 추려내고, 아울러 숙종 이후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사적을 모아 단순히 증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¹⁵ 책명에 대한 논의는 이듬해도 계속되어 1월 6일 ‘여지편람’ 혹은 ‘강역지’ 등의 이름이 편벽됨이 지적되면서 ‘해동문헌통고’, ‘해동문헌편람’ 등이 거론되었으나¹⁶ 이름을 잠정적으로 ‘문헌비고’로 정하고 편찬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¹⁷ 책명에 대해서는 그 뒤로도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문헌비고’로 할 것으로 결정되었다.¹⁸

문헌비고의 체재에 대해 처음에는 강역과 여지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편벽함이 지적되면서 예약과 형정을 포함하여 『문헌통고』의 각고를 편찬하는 방식으로 집필 방향이 정해졌다.¹⁹ 편집 장소는 평시서(平市

14 『承政院日記』 1299책, 영조 45년 12월 24일(『승정원일기』 72-702 다 라). “鳳漢曰 重臣具允明 有稟達事云矣 上曰進前 允明進伏曰 疆域誌若成出 則八路山川 道里遠近 可以洞然 頗倣輿地勝覽之規成之 似好矣 上曰 好矣 早書以入 鳳漢曰 右相以爲 我國典故 無一該博 欲創東國文獻通考 而臣以爲張大 故姑未稟定矣 上曰 我國規模 如均役濟川等事 皆載錄則甚好 而疆域誌之目甚野 此則校正可也 允明曰 申景濬明於典故 疆域誌使之釐正好矣 鳳漢曰 景濬雖不善言語 聰明精詳 鍊達機務 眞可謂備局文郎 使之董力矣 上曰 老乎少乎 鳳漢曰 不老矣 尚喆曰 更得如此之人 同爲照管好矣 上曰然矣 鳳漢曰 洪縉海 亦爲備郎 以乃父之子 必該博於此等事矣 上曰 頃者以疆域誌下教 今覺其名近於野 名曰輿地便覽 此非張大者 令口管備局堂郎照管 紙筆墨書寫許給 郎廳申景濬 臺職許遜 復差備郎 今該曹 口傳付軍職 其令專意茲事 上曰 前司課申景濬入侍 宅仁出居 召入申景濬 景濬進伏 上曰 疆域誌 汝意則必有方略 何以則爲好耶 對曰 各邑地圖 以數尺之紙 難考其長短闊狹 三百六十州 各有圖 然後可無註誤矣 尚喆曰 此則不緊 但書其從某與大綱好矣 上曰此言好矣 依此更爲滄詳以奏(下略)”.

15 『頤齋亂藁』 권13, 己丑 1769년 12월 28일. “蓋二提調鄭參判 方兼備局堂上 豈亦兼察本局所修輿地便覽之役歟 輿地便覽 卽所謂疆域志也 余無有得見其凡例 豈就輿地勝覽中 攷出疆域關防山川道里之實 兼以肅廟己卯 當宁戊寅 所培事跡增修者歟”.

16 『承政院日記』 1300책, 영조 46년 1월 6일 갑신(72-721 다 마).

17 『頤齋亂藁』 권14, 庚寅 1770년 1월 11일.

18 『承政院日記』 1302책, 영조 46년 3월 5일 임오(72-819 라 마).

19 『頤齋亂藁』 권14, 庚寅 1770년 1월 12일. “文獻備考 初止疆域輿地文字耳 旋聞以此添入 凡禮樂刑政之類 備焉 蓋亦古人所輯文獻通考之例歟 編輯堂上八人 具允明元仁孫蔡濟恭洪名漢李最中李潭鄭存謙金應淳 郎廳八人 趙琰洪龍漢金鍾秀李得一徐浩修洪縉海黃幹申景濬 皆啓下差定”.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외 · 도서 인식

뽕)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²⁰ 곧바로 일의 편의를 위해 어소(御所) 근처에 편 집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여러 명의 편집당상과 편집낭청을 편재해 두었다.²¹

『동국문헌비고』의 편찬에 대해 지식인층의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황윤 석도 편집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²² 그러나 영조는 편찬명령을 내리고 나서 책의 편찬을 서둘렀다. 『동국문헌비고』는 영조의 독촉과 열의 덕분에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다. 영조는 수시로 편집진을 불러 그때까지 편찬한 것을 읽도록 하여 진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영조는 이들이 원래 부담했던 업무를 줄여 주면서까지 편찬에 전념하도록 독려했다.²³ 정존겸이 일을 급히 추진하는 관계로 소략하고 빠지는 것이 있을 것이 염려된다고 하자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음에 속편에서 보충하면 된다고 하였다.²⁴

영조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 덕분에 문헌비고의 편찬 작업이 신속히 완성 되었으며 이어 홍계희(洪啓禧), 서명응(徐命膺) 등에게 문헌비고를 교정하도록 하였다.²⁵ 인쇄도 감인역(監印役)과 감인당랑(監印堂郎)을 차례로 임명하여 출판을 독려했다.²⁶ 마침내 1770년(영조 46) 8월 4일 『동국문헌비고』 100권

20 『承政院日記』 1300책, 영조 46년 1월 9일 정해(72-727 바). “備忘記 東國文獻備考編輯處 爲平市署 紙筆墨 令度支上下 書寫吏隸 令本處便宜取用”.

21 『承政院日記』 1300책, 영조 46년 1월 11일 기축(72-734 나). “都提調洪鳳漢曰 今此編輯廳 他處設廳有弊 設於備邊司 則似甚便宜矣 且堂郎孤單 加出可堪人 則可期成效 上曰 文獻備考 平市署令堂郎看檢云 而靜而思之 時御所近處可也 故今番次對下詢前 領相以備局議定云 果是 依此舉行”.

22 『頤齋亂藁』 권14, 庚寅 1770년 1월 12일. “大抵古今編輯之役 亦非小事 人之聞見 固患未博 雖幸博矣 尤患未精 此通患也 我朝前後編輯 非不多矣 類皆草率疎漏 無足寓目 未知今日 諸人當何料理”.

23 『承政院日記』 1300책, 영조 46년 1월 14일 임진(72-745 가); 『承政院日記』 1301책, 영조 46년 2월 5일 임자(72-774 라 마); 『承政院日記』 1302책, 영조 46년 3월 21일 무술(72-854 가).

24 『承政院日記』 1300책, 영조 46년 1월 17일 을미(72-749 마 바).

25 『承政院日記』 1304책, 영조 46년 5월 16일 임진(72-979 바).

26 『承政院日記』 1304책, 영조 46년 5월 20일 병신(72-987 나); 『承政院日記』 1304책, 영조 46년 5월 28일 갑술(72-1009 라 마); 『承政院日記』 1305책, 영조 46년 윤5월 16일 신유(73-36~37); 『承政院日記』 1306책, 영조 46년 6월 13일 정해(73-82 마).

40책이 목판으로 인쇄가 되어 임금에게 바쳐졌다.²⁷

III.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우리나라 강역의 범주에 대해 고구려 때는 요동까지 차지하였지만 고려 때는 한반도를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²⁸ 요동의 지계를 잃어버린 후²⁹ 조선 왕조 초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일원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지금의 평안도·함경도 두 도는 고구려가 망한 뒤로부터 발해(渤海)와 여진(女眞)에게 점거당하는 바가 되어, 궁예(弓裔)가 얻은 것은 다만 폐서(溍西)의 12개 진(鎭)뿐이었다. 서희(徐熙)는 말하기를, “거란의 동경(東京)으로부터 우리의 안북부(安北府)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여진(生女眞)에게 점거 당하는 바가 되었다.”고 하였다. 광종(光宗)이 그 땅을 취하여 거주(嘉州)에 송성(松城)을 쌓았으니, 서희는 바로 성종 때 사람으로 이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이다. 광종과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점점 먼 곳까지 개척하고, 그 말엽에 이르러서는 압록강 이내의 땅을 모조리 차지하였다. 『고려사』 「지리지」에 이르기를, “당나라 이래로 압록강을 한계로 삼았다.”고 한 것은 그 주장이 소홀하다. 동북은 고려의 경계가 지금 정평(定平)의 도련포(都連浦)에 있어, 유소(柳韶)가 쌓은 장성(長城)이 그치는 곳이다. 함주(咸州) 등 9개 성은 예종 때 여진을 격파하고 쌓은 것이나 얼마 안 있다가 곧 철수

27 『英祖實錄』 권114, 영조 46년 8월 丁丑(『朝鮮王朝實錄』 44-360 가). “編輯廳堂郎 池進新刊東國文獻備考四十卷 上御崇政殿月臺降階親受之 監印堂上洪名漢李潭加資 餘各賞實有差”.

28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 보이는 우리나라 역대 국가들의 역사지리 변화에 대해서는 박인호, 1996, 앞의 책, 143-172쪽 참조.

29 『동국문헌비고』 권22, 「여지고」 17, 관방 7, 해로, 13b. 이하 『동국문헌비고』는 장서각본(2-2075), 『증정문헌비고』는 전북대본(동 0.321 동국문)과 서울대본(고5120-170), 『증보문헌비고』는 장서각본(2-2094)을 이용하였다. 필요시에는 『증보문헌비고』의 경우 동국문화사 영인본(단기 4290년)도 같이 이용하였다.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로·도서 인식

하여 돌아오고, 나라가 망할 때에 이르러 비록 갑주(甲州)·길주(吉州) 등지를 얻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본래 우리의 강토가 아니었다. 지금의 경원(慶源)·경성(鏡城)·부령(富寧)·회령(會寧)·종성(鍾城)·경흥(慶興)·온성(穩城) 등지는 모두 조선 왕조에서 개척한 것이다.³⁰

따라서 조선에 들어와 국계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확보되었으며, 『동국문헌비고』 찬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고려를 뛰어넘은 조선의 위업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그 뒤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까지 이어진다.³¹

한편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지고」 군현연혁조를 보면 고려, 백제, 신라, 고려의 주군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다음 조선의 8도 체제를 정리하고 있다.³²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조선 왕조가 8도 군현 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경선을 확정된 것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군현과 산천의 범주를 한반도 이내로 상정하였다.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할 수 있다. 후일 나온 『증정문헌비고』에서도 앞머리에 1413년(태종 13) 처음으로 8도의 주군 체제를 마련했음을 다음과 같이 별기하고 있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 처음으로 8도의 주·군을 정하였는데, 사방의 중앙에 위치한 것을 '경기'라 하고, 서남방에 있는 것을 '충청도'라 하고, 동남방에 있는 것을 '경상도'라 하고, 남방에 치우쳐 있는 것을 '전라도'라 하고, 정동방에 있는 것을 '강원도'라 하고, 정서방에 있는 것을 '황해도'라 하고, 동

30 『동국문헌비고』 권7, 「여지고」 2, 역대국계 2, 31a~b. 이하 『동국문헌비고』의 번역문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번역본(『국역 증보문헌비고』, 1978~1996,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을 이용하였다. 다만 일부 난삽하게 수록된 한자는 삭제하였다.

31 『동국문헌비고』와 『증정문헌비고』에서는 보이지 않던 본조의 국계에 대한 다음의 부분이 『증보문헌비고』에서는 별도로 추가되었다. “또 살펴보건대 조선의 강역은 고려의 옛 지역을 그대로 받았지만 오직 함경도 한도의 땅은 1천여 리나 더 개척하였다. 대체로 고려의 동북 경계는 길주(吉州)에서 다하였는데, 조선의 동북 경계는 경원(慶源)에서 다하였으니, 아래에 자세하게 보인다”(『증보문헌비고』 권14, 「여지고」 2, 역대국계 2).

32 『동국문헌비고』 권8, 「여지고」 3, 군현연혁 1.

북방에 있는 것을 ‘함경도’라 하고, 서북방에 있는 것을 ‘평안도’라 하였으니, 무릇 유도부(留都府)가 2고을, 부윤(府尹)이 6고을, 대도호부(大都護府)가 5고을, 목(牧)이 20고을, 도호부(都護府)가 74고을, 군(郡)이 73고을, 현(縣)이 1백 54고을, 도합 334고을이었다.³³

이러한 8도의 군현 체제 속에서 각 도의 기술 순서로 『동국문헌비고』에 서는 경기,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의 순으로 다루었다.³⁴ 특히 함경도의 경우 6진 개척에 대한 논의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평안도의 경우 폐사군에 대한 논의가 자세하다.

『증정문헌비고』에서는 아래의 군현에 대한 표에서 보이듯이 함경도와 평안도의 서술 면수의 증가가 눈에 띈다. 특히 평안도의 경우 거의 배가 될 정도이다. 이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대한 정조 대의 증대된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나온 『증보문헌비고』에서는 기울어져 가는 국가의 모습처럼 증정된 부분이 오히려 축약되었다.

〈표 1〉 『동국문헌비고』와 『증정문헌비고』 「여지도」의 목차와 내용 비교

『동국문헌비고』	서술 면수	『증정문헌비고』	서술 면수
권9, 「여지도」 4, 군현연혁 2	경기(1a-11a)	권16, 「여지도」 4, 군현연혁 2	본조(1a-3a)
	충청도(11b-23b)		경기(3a-16a)
	강원도(24a-31b)		충청도(16a-29b)
	황해도(31b-38a)		전라도(29b-54b)
권10, 「여지도」 5, 군현연혁 3	전라도(1a-20a)	권17, 「여지도」 5, 군현연혁 3	경상도(1a-30b)
	경상도(20b-41b)		강원도(30b-40a)

33 『동국문헌비고』(권9, 「여지도」 4, 군현연혁 2)에서는 바로 본조의 경기도를 다루었는데 『증정문헌비고』(권16, 「여지도」 4, 군현연혁 2, 서울대본)에서는 총괄하여 정리한 부분이 별도로 추보되었다.

34 조선의 8도 체제로 『동국문헌비고』 9, 「여지도」 4, 군현연혁 2에서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동국문헌비고』 권10, 「여지도」 5, 군현연혁 3에서는 전라도, 경상도, 『동국문헌비고』 권11, 「여지도」 6, 군현연혁 4에서는 함경도, 평안도를 다루었다. 대체로 『동국문헌비고』에서는 경기 지역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는 뒤에 나오는 『증정문헌비고』에서 전라, 경상도를 먼저 다루는 것과 순서가 다르다.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외 · 도서 인식

권11, 「여지도」 6, 군현연혁 4	함경도(1a-15a)	권18, 「여지도」 6, 군현연혁 4	황해도(1a-9a)
	평안도(15a-24a)		함경도(9a-38b)
	부설 총론군현지제 (24a-28b)		평안도(38b-57a)
			부설 총론군현지제 (57a-64a)

한편 산천과 도리의 구분에 있어서는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지리관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신경준은 이미 『산수고』에서 12개의 산과 12개의 강을 주축으로 각 지맥과 수맥을 정리하여 산과 강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일부 『산수고』에서 누락된 부분은 『동국문헌비고』 산천조에 보완되어 있다.³⁵ 『동국문헌비고』의 산천조의 구성을 보면 1(총설), 2(한성부, 경기, 충청도), 3(강원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 4(함경도, 평안도, 도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신경준의 『산수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도와 동일하다.³⁶

『동국문헌비고』 산천조의 총설에서는 12개의 산과 12개의 강을 중심으로 지맥과 수맥을 정리하였다.

산 가운데 나라 안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12인데, 1은 삼각산(三角山)이고, 2는 백두산(白頭山)이고, 3은 원산(圓山)이고, 4는 낭림산(狼林山)이고, 5는 두류산(豆流山)이고, 6은 분수령(分水嶺)이고, 7은 금강산(金剛山)이고, 8은 오대산(五臺山)이고, 9는 태백산(太白山)이고, 10은 속리산(俗離山)이고, 11은 장안산(長安山)이고, 12는 지리산(智異山)이다. 물 가운데 나라 안에서 으뜸이 되는 것도 또한 12인데, 1은 한강(漢江)이고, 2는 예성강(禮成江)이고, 3은 대진(大津)이고, 4는 금강(錦江)이고, 5는 사호강(沙湖江)이고, 6은 점강(鯀江)이고, 7은 낙동강(洛東江)이고, 8은 대동강(大同江)이고, 9는 청천강(淸川江)이고, 10은 용흥강(龍興江)이고, 11은 압록강(鴨綠江)이고, 12는 두만강(豆滿江)이다. 산은 삼각산

35 박인호, 1996, 앞의 책, <산수고>, 137-140쪽.

36 『여암전서』 권10, 「산수고」, 경인문화사, 1976, 315-436쪽.

을 우선으로, 물은 한강을 우선으로 하였으니, 경도(京都)를 높인 것이다.³⁷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산과 하천을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³⁸ 『동국문헌비고』에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도 각 군현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대의 풍수적 지리관이나 백두대간 중심의 지리관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동국문헌비고』에서 서울에서 각 지역에 이르는 9개의 도로망을 정리하고 있다.³⁹ 신경준의 개별 저작인 『도로고』에서도 보이고 있지만⁴⁰ 자연과 경제 지리의 전문 저술이라는 점, 도로의 이정과 기점 파악에 용이한 정보라는 점, 서울을 기점으로 하는 도로망의 파악이 용이한 점, 정확한 거리의 조사라는 점 등에서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국토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이 삼가 고지지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지형과 사방의 도리를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여지승람』 등 여러 책의 기록한 바와 조금 같지 않은 점이 있으나, 『고사촬요(攷事撮要)』가 보기에 편리하겠으므로 아래에 부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해좌 사향(亥坐巳向)이다. 온성(穩城)이 정북쪽으로 서울에서의 거리가 2천 91리이고, 해남(海南)이 정남쪽으로 서울에서의 거리가 1천 7리이고, 영해(寧海)가 정동쪽으로 서울에서의 거리가 5백 40리이고, 풍천(豐川)이 정서쪽으로 서울에서의 거리가 5백 62리이다. 남북이 3천 98리이고, 동서가 1천 1백 2리이다.⁴¹

이와 같이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조선을 이루고 있는 산천과 도로에 대

37 『동국문헌비고』 권12, 「여지고」 7, 산천 1, 1a.

38 『동국문헌비고』 권12, 「여지고」 7, 8, 9, 산천 2, 3, 4.

39 『동국문헌비고』 권15, 「여지고」 10, 도리 25a~44a.

40 박인호, 1996, 앞의 책, 〈도로고〉, 132~135쪽.

41 『동국문헌비고』 권15, 「여지고」 10, 산천 4, 도리, 43b~44a.

한 정보를 주제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세기 『동국여지승람』이나 18세기 『여지도서』 등 전국 지리서에서는 각 군현 단위로 분산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동국문헌비고』는 백과전서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산과 강, 그리고 도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 책의 편찬 목적이 국가가 전국을 제일적(齊一的)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IV.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해로·도서 인식

1. 『동국문헌비고』의 해로 인식

1) 연안 해로

신경준의 연안에 대한 이해는 국가의 방비를 충실히 하고 백성을 풍요롭게 하려는 이용후생 사상의 소산이며, 특히 선박 제도를 개선하고 해로를 정리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⁴² 신경준의 저술인 『사연고(四沿考)』는 권1에서는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 연강 지역(沿江地域)과 8도 연해로(沿海路)를 정리하였다. 이는 『도로고』 권3의 사연로(四沿路)와 팔도연해로(八道海沿路)와 일부 중복되기도 한다.⁴³ 『사연고』 권2는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해로, 조석간만 등 수로를 이용한 교통망을 정리한 우리나라 연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다. 기술 내용 속에서 해방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국방 문제에 연계되어 있으며, 섬의 재용(財用)에 대한 주장은 경제성에 대한 자각도 보여 주고 있어 당시까지 나온 연안에 대한 저술로는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⁴⁴ 그런데 이 부분은 『동국문헌비고』의 해방조와 해로조의 내용과

42 신익철, 2009, 「신경준의 국토지리관과 해로·선박에 대한 인식」, 『한국한문학연구』 43.

43 『旅菴全書』 권1, 『四沿考』.

44 박인호, 1996, 앞의 책, 〈사연고〉, 135-137쪽.

서로 통한다.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우리나라의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북쪽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경이 이루어져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면 바다에 대해 서해는 발해, 동해는 창해(滄海)라는 인식이 있었다.⁴⁵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한서』에 “팽오(彭吳)가 예맥·조선의 길을 뚫고 창해군(滄海郡)을 설치하니, 연(燕)나라와 제(齊)나라 사이가 휩쓸리듯 발동하였다.”라고 하였고, 또, 동해(東海)를 창해라 하고, 예국이 동해가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창해군이라 한 것인데, 부여는 동해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부여가 창해군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옛말에, “부여의 임금의 스스로 망명한 사람이라 일컬었고, 나라의 늙은이들도 또한 스스로 옛날에 망명한 사람이라고 일컬었으며, 남려가 내속(內屬)하여 부여의 예(儀)가 되었다.” 하니, 이 말이 맞는 듯합니다.⁴⁶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이어서 연안 해로에 대해 해방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 해방조는 당대 해방 체계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⁴⁷ 그런데 이러한 해방 체계는 해안 지역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해안과 관련하여 선행하는 책으로 이전에 서문중(徐文重)의 『해방지(海防志)』가 있었다. 『동국문헌비고』에 서문중의 『해방지』 기록이 인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⁴⁸ 해방에 대한 지식은 이 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45 안정복도 『동사강목』(권수, 『동사강목도』, 〈조선사군삼한도, 규장각본〉에서 동해를 창해, 서해를 발해라고 적고 있다. 안정복의 자필본 『동사강목』의 〈삼국초기도〉에서는 동해를 창해(滄海), 서해를 발해(渤海), 남해를 한해(瀚海)라고 적고 있다.

46 『동국문헌비고』 권13, 「여지고」 1, 역대국계 1, 예국.

47 각 도서를 연결한 해방체계는 이근호의 논문(이근호, 2016, 「18세기 중반 동국문헌비고 해방조 편성의 역사적 의의」, 『한국학논총』 46)의 표 참조.

48 『동국문헌비고』 권99, 「직관고」 9, 외무직, 통제사조. “徐文重海防志曰 宣祖二十六年 統制使李舜臣狀啓 請以文官一員 依巡邊使例 號以從事官 往來通議所屬沿邑巡檢 措置 以長興居前府使丁景達差下”.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그런데 『동국문헌비고』 해방조의 각 도서에 대한 서술은 멀리는 고려 이후 지속되었던 왜(倭)의 출몰과 가까이로는 범월선(犯越船) 및 황당선(荒唐船)의 출현에 따른 해양관방 시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동국문헌비고』에 적고 있듯이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 범월선이 증가하고 있었다.⁵⁰ 또한 연해의 각 진(鎭)에서는 황당선이 왕래하고 있었다.⁵¹ 이에 각 진에서는 후망(候望)하여 본영에 치보하도록 하였다. 동해안의 경우에는 고려 이후 왜의 출몰이 이어지고 있었다.⁵² 이러한 해안 방면에서의 위기의식이 『동국문헌비고』 해방조의 편성으로 나타났다.⁵³

2) 해외 해로

『동국문헌비고』의 해외 해로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해로조가 있다.⁵⁴ 『동국문헌비고』 해로조와 이후 『증정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해로조의 목차와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49 『동국문헌비고』 「병고」 주사조에도 서문중의 주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문중의 역사서인 『조야기문』에 없는 구절이라 역시 『해방지』의 것으로 추정된다(徐文重曰 東國地形三面際海 而南對島夷 風帆蹕至 無間遠近 同被其害 至于麗末而極矣 國家革代之初 諸路傍海之地 皆築城堡 各置水軍節度使以領之 壬辰之亂 李舜臣擁舟師 搃守南邊 大挫賊鋒 使不得過露梁 以蔽遮兩湖 議者以爲中興之大業 全賴於此矣 始置統制使於固城 管制三南舟師 沿海郡邑 亦置戰船 其視國初之制 船數雖少 而體制之宏大 器械之完備 又什倍矣 丁酉許和之後 不以狼煙靜息 益修戎備 及至今日殆無遺策).

50 『동국문헌비고』 권21, 「여지고」 16, 관방 6, 해방 4, 白翎島, 8a, 白沙汀, 8a.

51 『동국문헌비고』 권21, 「여지고」 16, 관방 6, 해방 4, 喬桐, 11b. 황당선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명휴의 『춘관지』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황당선을 수록하고 있는 데서도 보인다(『춘관지』 권3, 규정각본, 7963).

52 『동국문헌비고』 권18, 「여지고」 13, 관방 3, 해방 1, 鬱陵島, 7b; 『동국문헌비고』 권19, 「여지고」 14, 관방 4, 해방 2, 對馬島, 2b.

53 이근호의 논문에서 해방 체계의 강화는 황당선의 출몰과 도서지역 유이민 증가에 따른 관리와 통제를 들고 있다(이근호, 2016, 앞의 글, 136-138쪽).

54 『동국문헌비고』 권22, 「여지고」 17, 관방 7, 해로, 13b.

〈표 2〉 『동국문헌비고』, 『증정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해로조 내용 비교

『동국문헌비고』 권22, 『여지도』 17, 관방 7, 해로	『증정문헌비고』 권34, 『여지도』 22, 관방 10, 해로	『증보문헌비고』 권35, 『여지도』 23, 관방 11, 해로	비고
1 西南海路	1 西南海路	1 西南海路	
2 中國相通海路 朝貢海路	2 中國相通海路 ×	2 中國相通海路 ×	조공해로는 「조빙고」(「교빙고」), 辛酉以後航海路程에 수록
3 西海亭館	3 西海亭館	3 西海亭館	
4 師路	4 師路	4 師路	
5 漕路	5 漕路	5 漕路	
6 西海犯越防守	6 西海犯越防守	6 西海犯越防守	
7 日本相通海路	日本交聘海路	日本交聘海路	일본상통해로에서 이항복 알. 김세 렴 알. 신근안 사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빙고」 9(「교빙고」), 역대교 빙 1, 부 빈점에 수록됨
8 琉球國相通海路	×	×	「조빙고」 10, 역대교빙 2(「교빙고」 10, 역대각국교빙)에 수록됨
附 潮汛	附 潮汛	附 潮汛	

『동국문헌비고』 해로조의 기술을 보면 크게 9개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각
해역별로 기록하고 있다.

서남해로에서는 용산에서 시작하여 통진과 유도로 나아가 남쪽으로 내
려가 부산진을 끼고 돌아 기장, 울산, 장기, 영일을 지나는 노선과 유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신도에 이르는 해안의 도서를 열거하였다.

중국상통해로에서는 중국의 『송사』, 『속문헌통고』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과 고려의 해로 노선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괴원등록(傀院謄錄)』의
1621년(광해군 13) 신유 이후 경로인 조공해로를 소개하고 있다.⁵⁵ 이어 삼한
이래의 광해군의 신유 해로 교통까지 개괄적으로 해로를 정리한 내용을 추
가하였다.

삼한과 신라·백제 초기에는 모두 낙랑·대방 두 군에 나아가서 공헌(貢獻)

55 이 부분은 『증정문헌비고』에서 「조빙고」의 '辛酉年以後航海路程'으로 이동하였다(『증정문헌비고』 권105,
「조빙고」 8, 附 朝聘雜儀. 38b~39b).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로 · 도서 인식

하고 일찍이 중국에 간 적은 없었다. 진(晉)나라에서 칠을 두 군에 공급하였고,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무렵에 백제 염사인(廉斯人) 소마시(蘇馬謨) 등이 낙랑에 나아가서 공헌하자, 황제가 소마시를 봉하여 한의 염사읍군(廉斯邑君)으로 삼아 낙랑에 소속시키고 사시(四時)에 조알(朝謁)하게 하였으니, 위(魏)나라 명제(明帝) 경초(景初) 무렵에 여러 한국(韓國)이 두 군에 나아가서 조알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진(晉)나라로부터 당(唐)나라에 이르기까지 남북조(南北朝) 시대에는 백제에서 모두 항해하여 사신을 보냈고, 양(梁)나라 무제(武帝) 보통(普通) 무렵에 신라에서 비로소 사인(使人)으로 하여금 백제를 따라 방물을 바쳤으며 당(唐)나라에 이르러 조공을 매우 부지런히 하였는데, 또한 바다를 이용하였다. 당나라 현종(玄宗)이 촉에 있을 적에 사신이 바다를 건너 양자강으로 들어가서 촉에 이르렀으며, 견훤이 오월(吳越)에 사신을 보낼 적에 나주(羅州)를 경유하였는데, 오월왕이 또한 보빙하여 왔었다. 고려는 그 국도가 송악이었기 때문에 송악 뒤 서강(西江)에서 배를 출발시켰는데, 조공하는 예가 중하므로 그 강 이름을 예성강(禮成江)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공사(公私) 선박이 모두 이 강에 들어오니, 고려 악부(樂府)에 예성강곡(禮成江曲)이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명나라가 일어나서 황도(皇都)가 금릉(金陵)에 있을 때에는 고려와 조선이 해로를 경유하였는데, 연경(燕京)으로 도읍을 옮기자 육로를 따라 갔으니, 이것은 태종 기축년(己丑年)에 비롯되었다. 광해군(光海君) 신유년(辛酉年)에 요동·심양 길이 막히자 다시 해로로 조공하였다.⁵⁶

서해정관은 서해의 사신을 영송하기 위해 설치된 사관(舍館)에 대한 고증인데 당항진, 초도의 당관, 군산정, 보령 고만정, 홍주 분도, 인천 자연도, 송도 벽란정 등의 위치를 고증하였다. 여기서는 고려 이후 외국과 관련된 교통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에서 보이는 거의 유일한 외국과의 교섭 기록이다.

56 『동국문헌비고』 권22, 「여지고」 17, 관방 7, 해로, 7b~8b.

고려 초기에는 많이 해서의 풍천(豐川)·장연(長淵)·옹진(翁津) 등지를 통하여 중국에 왕래하였으나 뒤에는 많이 호남의 해중을 통하여 왕래하였다. 송나라의 상선이 많이 제주에 정박하였는데, 천주(泉州)·태주(台州)·복주(福州)·등주(等州)의 사람들이 해마다 와서 공물을 바쳤고, 대식(大食)·섬라(暹羅)의 여러 나라에서도 또한 방물을 바쳤다. 원나라 때에는 총관부(總管府)를 제주에 설치하고, 제주에서 원나라에 조공을 하였다. 제주의 서쪽 60리에 명월포(明月浦)가 있는데, 이곳에서 순풍을 기다렸고, 또 홍로천(洪爐川)으로부터 서귀포(西歸浦)에 들어가서 바람을 기다려 출발하였는데, 서귀(西歸)라는 이름은 원나라에 조공하는 데에서 연유된 것이다. 원나라는 또 연해에 수역(水驛)을 설치하였는데, 탐라로부터 압록강과 아울러 양천(楊川)의 해구(海口)에 이르기까지 모두 30개 소(所)였다. 그 하나는 추자도(楸子島)에 수참(水站)의 옛 터에 있으며, 그 나머지는 상고할 수가 없다. 원나라 순제(順帝)가 제주에 궁실을 건축하고 많은 금백(金帛)을 실어 와서 난을 여기에서 피하려고 하였다. 장사성(張士誠)이 웅거한 항주(杭州), 방국진(方國珍)이 웅거한 태주(台州)는 모두 해마다 고려에 사자를 보내거나, 혹은 1년에 두 번씩 오기도 했는데, 공민왕 병신년(丙申年)에 원나라에 항복한 뒤에 우리나라에 귀부하려고 하였다. 고려에서도 또한 여러 번 사자를 보내어 보빙했는데, 모두 다 제주의 오른편 바다를 경유하여 다녔다. 유구(琉球)의 사신은 순천(順天)에 와서 배를 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한 보빙할 때에는 제주의 왼편 바다를 경유하여 다녔다.⁵⁷

사로는 군사상의 행로를 의미하는데 중국의 경우 비록 육군이 요동의 육로로 나오더라도 반드시 별도로 해로를 통해 군사를 보냈다.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백제가 요서, 진평을 경략한 해로나 고려 고종, 조선

57 『동국문헌비고』 권22, 「여지도」 17, 관방 7, 해로, 10a~10b. 여기서 언급한 외국들에 대한 조빙 기록은 간략하게 나라 이름을 거론한 수준인데 『증정문헌비고』(권107, 「조빙고」, 10, 역대교빙 2)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교섭 내용이 확장되었다.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로·도서 인식

인조 대 일으킨 군사의 해로를 별도로 소개하였다.⁵⁸

조모에서는 양곡을 실어 나르는 경로를 다루고 있는데 요심(遼瀋)이 중국의 관도에 들어가지 아니한 때에는 모두 다 해로로써 통행했다고 적고 있다.⁵⁹ 그리고 서해에서 범월을 못하도록 한 것은 인조 이후 함부로 해로를 통해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적고 있다.⁶⁰

일본교빙해로는 일본과의 교빙 해로에 대한 기록으로 『통문관지』의 통신 해로, 『왜기』, 김세렴의 노정, 일본 사행에 대한 신근안 안설, 이항복 기록, 김세렴 기록, 일본 지형에 대한 신근안 안설 등을 수록하였다.⁶¹ 일본 사행에서 통신사 경로에 대해 만약 일기도(壹岐島)에서 축전주(筑前州)를 거쳐 장문주(長門州)에 가서 육지에 오르면 바로 왜경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향포(向浦)·겸예(鎌刈)·실진(室津) 등 수로(水路)로 돌아가는 것은 그 뜻을 알 만하다고 일본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적고 있다.⁶² 일본과의 해로에 대해 동해는 변방이 걱정이 없는 편인데 고려 문종 이후로 왜의 도적질이 시작되었으나 영남의 연안에 그쳤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북(關北)·영동(嶺東)은 범경이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일본이 한반도로 오기에 어려운 자연환경을 들고 있다.⁶³

유구국상통해로(琉球國相通海路)는 『증정문헌비고』에서 「조빙고」로 옮겨 정리하였다.⁶⁴

『동국문헌비고』는 해외 해로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교빙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서구나 혹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까지 정보가 나아가지는 못

58 『동국문헌비고』 권22, 「여지고」 17, 관방 7, 해로, 12a.

59 『동국문헌비고』 권22, 「여지고」 17, 관방 7, 해로, 13b.

60 『동국문헌비고』 권22, 「여지고」 17, 관방 7, 해로, 13b~15a.

61 『동국문헌비고』와는 달리 『증정문헌비고』 「여지고」 해로에서는 이항복 왈, 김세렴 왈, 신근안 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조빙고」로 이동하였다(『증정문헌비고』 권106, 「조빙고」 9, 역대교빙 1, 附 僞接日本).

62 『동국문헌비고』 권22, 「여지고」 17, 관방 7, 해로, 21a.

63 『동국문헌비고』 권22, 「여지고」 17, 관방 7, 해로, 21a~b.

64 『증정문헌비고』 권107, 「조빙고」 10, 역대교빙 2, 신근안 사론인데 이만운은 『증정문헌비고』를 편찬하면서 신근안의 주장이 신경준의 것이므로 '신경준 왈'을 표제로 세워 인용하고 있다(『증정문헌비고』 권106, 「조빙고」 9, 역대교빙 1, 50a~b).

하였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중국, 일본, 유구에 대한 노정을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어 당시 『동국문헌비고』가 가진 세계 인식상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다만 해로에서는 일본이 한반도에 오기 어려운 자연환경을 적거나 혹은 중국과 조선의 군사 동원, 범월에 대한 저지 등의 기술을 통해 해양으로부터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적고 있다.

2. 『동국문헌비고』의 도서 인식

조선의 영토적 범주를 군현연혁과 산천조에서 규정하였다면 각 해안의 섬에 대한 기록은 『동국문헌비고』 해방조에 기술하고 있다. 이는 도서 지역과 섬을 해양관방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이에 영조 대 당시의 해양 영토의식이 당연히 담겨 있다.⁶⁵ 그런데 대부분 섬들은 간략하게 도서에 대한 거리와 사실 기록만을 남긴 반면에 울릉도, 대마도, 가도는 특별하게 장문의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섬들은 일본, 중국과 분쟁이 있었던 곳이었다.

『동국문헌비고』 「병고」 주사조에서는 신라, 고려, 조선의 수군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고 있다. 주사는 해방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해안의 방어와 관련이 있다. 『고려사』에서는 「병지」 선군조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각 해역별로 해안과 섬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1) 동해

『동국문헌비고』에서는 동쪽 해안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경흥(慶興)의 조산(造山)의 남쪽에서부터 서남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뻗어 나가 경성(鏡城)에 이르고, 경성에서 남쪽으로 어랑포(魚郎浦)에 이르며, 어랑포

65 『동국문헌비고』 해방조의 내용은 『萬機要覽』, 「軍政篇」 4, 海防에 그대로 재록되어 있다. 여기서도 『동국문헌비고』가 미친 영향을 볼 수 있다.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로·도서 인식

에서 동쪽으로 꺾어져서 가을마산(加乙午山)이 끝난 곳에 이르고, 가을마산의 남쪽에서부터 서남쪽으로 향하다가 꺾어져 돌아서 길주(吉州)의 문암(門巖)에 이르며, 성진(城津)에서부터 남쪽을 향하다가 호타 봉대(胡打烽臺)의 동쪽 단천(端川)에서부터 서남쪽을 향해 비스듬히 뻗어나가 정평(定平)에 이르며, 영흥(永興)에서부터 남쪽을 향하다가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져 덕원(德源)의 북쪽에 이르며, 덕원에서부터 동남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뻗어나가 장기(長鬐)와 울산(蔚山)에 이르며, 울산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다가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져 동래(東萊)의 해운대(海雲臺)에 이른다. 대개 동해의 연안은 서해와 남해와는 달리 물굽이가 구부러져 돌아가는 곳이 적다. 지면이 깊숙이 바다에 들어간 곳은 오직 경성(鏡城)의 이포(梨浦), 명천(明川)의 노시(露豸), 영일(迎日)의 동을배곶이(東乙背串)뿐이다.⁶⁶

이하 각 해안의 포구와 도서를 적었다. 그런데 울진에서 울릉도에 대한 기술을 자세히 적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를 구분 하였던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등 이전 시기에 편찬된 지리지의 기록을 수용하면서도 일설로 ‘우산=울릉 1도설’을 추가해 두었다. 당시 우산이나 울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상황에서 일설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지리 기록에서는 전통적으로 우산도와 울릉도로 구분하는 2도설이 우세하였다. 한편 울릉도에 대한 기술을 보면 『동국여지승람』 단계에서는 울진현에 울릉도 관련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울진의 현지인 『선사지』에서도 우산도와 울릉도를 별개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다.⁶⁷

66 『동국문헌비고』 권18, 「여지고」 13, 관방 3, 해방 1, 동해, 1a~b.

67 울진의 사찬읍지 『선사지』는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신열도가 쓴 서문이 있을 뿐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선사지(仙僊誌)』가 2종 수집되어 있다. 그런데 『선사지(내제 蔚珍邑誌)』 1은 그 내용에서 숙종대왕 여제사가 있어서 후대에 필사하여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울릉도 항목의 내용은 신열도(申悅道, 1589~1659)가 편찬한 사찬읍지 『선사지』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 이후 기록에서는 울릉도 기사가 울진에서 삼척으로 넘어가서 편찬되었던 점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울진의 입장에서 적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于山島에 대해 “在海正東洋中古國名 登高望之 穿然若丘陵”이라고 적고 있다. 울릉도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 일부 수정되고 산출되는 토산이나 黃雀의 모양을 적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선사지』 2는 울릉도 기사가 없는 조선 후기 관찬 읍지의 것을 기반으로 필사하여 만든 것이다.

숙종 대 안용복 사건이 일어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은 실학자들로 하여금 울릉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삼척영장을 파견하여 울릉도의 사적을 기술해 올리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자 울진보다 삼척에서 울릉도와 관련된 기록이 나타난다. 영조 연간의 『여지도서』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기술이 삼척으로 옮겨 가 있다. 다만 관찬 읍지에서는 아직도 울릉도를 둘러싼 쟁계를 크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울릉도에 대한 쟁계는 실학자들의 저술에서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익은 『성호사설』 「천지문(天地門)」의 울릉도조에서 울릉도의 역사를 적고 일본과의 분쟁과정을 적고 있다. 이익은 명칭을 막론하고 울릉도는 우리나라에 속하며 그 부근의 섬도 울릉도의 부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안용복에 대해 미천한 군졸로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하고 토지를 회복하였는데도 귀양을 보내어 그 의기를 꺾어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⁶⁸

이익의 이러한 주장은 아들인 이맹휴(李孟休, 1713~1751)의 저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맹휴는 일본과의 교섭 때 실행한 예제를 다룬 『춘관지(春官志)』와 빈집 기록인 『접왜역년고(接倭曆年考)』를 저술하였는데,⁶⁹ 『춘관지』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조에서 이익의 주장을 발전시켜 울릉도와 안용복 사건에 대해 기술하였다.⁷⁰

신경준이 집필한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이 주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

68 『성호사설』 권3, 「천지문」, 울릉도.

69 『성호집』 권16, 「書」, 答蔡比安 膺一〇辛未.

70 『춘관지』 저술과정을 보면 이맹휴가 죽자 여러 차례 『춘관지』를 증보하는 작업을 하였다. 1745년 『춘관지』 초고본을 완성한 후 1781년 왕명에 의해 유의양, 이기환이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재 『춘관지』 필사본은 규장각, 성호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남아 있으며 책 수는 다르나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인용서목에 따르면 18세기 중엽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맹휴의 편찬본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김문식, 2007, 『춘관지 필사본의 원문 비교』, 『성호학보』 4). 그렇다면 울릉도쟁계는 이맹휴의 초고 『춘관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대중이 쓴 『청성잡기』에 자신은 요요재(腰腰齋) 김용겸(金用謙)으로부터 소개받아 보았는데 책의 끝에는 안용복의 일이 이맹휴의 『춘관지』에 있었다고 적으면서 안용복의 일은 『文獻備考』에도 편입되었다고 적고 있다(『청성잡기』 제3권 「醒言」). 따라서 그 순서로 보면 『춘관지』에 있던 울릉도쟁계에 대한 내용을 신경준이 『강계고』와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미 신경준은 1756년(조선 영조 32)에 편찬한 『강계고(疆界考)』 울릉도조에서 울릉도의 위치와 연혁, 산물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의 과거 연혁뿐만 아니라 조선 정부에서 이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서 일설로 전하였던 ‘우산=울릉 1도설’을 재수룩하였던 유형원의 『여지지』 기록을 소개하면서도 다시 2도설을 내세웠다. 그리고 다른 한 섬은 송도(松島), 즉 독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별도로 안용복사(安龍福事)조를 두어 안용복의 활동 상황에 대해 적고 있다. 특히 안용복의 말을 빌리어 일본이 말하는 송도는 우산도이고, 이것은 우리의 땅에 속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신경준은 지금까지 다시는 울릉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모두 안용복의 공이라고 적고 있다. 신경준은 『강계고』의 울릉도와 안용복사의 내용을 『동국문헌비고』 울진의 울릉도 항목에 대부분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⁷¹

『동국문헌비고』의 울릉도 기사는 이맹휴의 『춘관지』 울릉도쟁계 기사와 함께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울릉도지(蔚陵島志)」와 「제안용복전후(題安龍福傳後)」,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비어고(備禦考)』에도 울릉도쟁계 관련 기사가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 이 기사는 또한 1808년 서영보·심상규 등에 의해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도 전재되어 있다. 또한 이가환, 윤행임 등 관료들의 서적에도 안용복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⁷²

2) 남해

『동국문헌비고』에서는 남해의 해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동래(東萊)의 남내포(南乃浦)에서 광양(光陽)에 이르기까지는 서쪽으로 향하

71 『동국문헌비고』 권18, 「여지고」, 13, 관방 3, 해방1, 동해, 7b~14a.

72 이가환, 『금대전책』, 「지리책」, 1789, 초계문신 친시.

여 가다가 약간 돌아서 남쪽으로 가며, 순천(順天)의 서쪽에서 해남(海南)에 이르기까지는 서남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뻗치어서 간다. 지면이 깊숙이 바다에 들어간 곳은 동래(東萊)에서는 다대포(多大浦)와 몰운대(沒雲臺)이고, 웅천(熊川)에서는 안골(安骨)과 신문(新門)이고, 칠원(漆原)에서는 구산(龜山)이고, 고성(固城)에서는 통영(統營)과 소비포(所非浦)이고, 진주(晉州)에서는 말문(末文)이고, 곤양(昆陽)에서는 노량(露梁)과 서면(西面)이고, 순천(順天)에서는 좌수영(左水營)과 고돌산(古突山)이고, 흥양(興陽)에서는 현(縣) 전체와 말포(鉢浦)·사도(蛇島)·녹도(鹿島)이고, 장흥(長興)에서는 회령포(會寧浦)이고, 영암(靈巖)에서는 갈두(葛頭)이고, 해남(海南)에서는 어란(於蘭)이다.⁷³

이어지는 남해의 도서와 포구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대마도이다. 동래에서 대마도를 다루고 있다.

대마도에 대해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비록 일본의 땅이지만 옛날 우리나라에 소속되었던 곳이라는 인식을 보여 주는 문건이 있다.⁷⁴ 그러한 점은 지도류에서도 보인다.⁷⁵ 조선 후기에도 이러한 생각이 그대로 유지되어 신경준은 『강계고』에서 대마도는 신라에 속했다고 적고 있다.⁷⁶ 그리고 이 주장은 『동국문헌비고』에서 반복된다. 대마도 항목에서 쌍행의 주석으로 거리와 우리나라에 속했던 사실을 앞세워 놓았다.

대마도(對馬島) : 부산에서 수로로 7백 70리이다. 지금은 비록 일본 땅이 되었으나, 본래 우리나라 지방에 속했던 까닭에 우리나라의 고사가 많으므로, 아울러 아래에 기록한다.⁷⁷

73 『동국문헌비고』 권19, 「여지고」 14, 관방 4, 해방 2, 남해, 1a~b.

7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동문선』 권24, 征對馬島敎書(魚變甲).

75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八道總圖)〉; 김수홍, 〈조선팔도고금총람도〉.

76 『강계고』 권6, 「신라국」, 小京; 『강계고』 권7, 「釜山」.

77 『동국문헌비고』 권19, 「여지고」 14, 관방 4, 해방 2, 남해, 2b.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로·도서 인식

『동국문헌비고』에서는 호공(瓠公)이 신라에 벼슬한 것을 근거로 우리 땅임을 알 수 있으나 저들의 땅이 된 것이 어느 시대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적고 있다. 특히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서 말하기를, “실성왕(實聖王) 무신년(戊申年)에 왜인이 영문(營門)을 대마도에 설치했다.”는 기사를 통해 본래부터 왜인의 땅에 속하였다면, 그곳에 영문을 설치한 것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종 때 이종무(李從茂)의 대마도 정벌 때 선포한 세종의 교지를 자세히 전하고 있다.⁷⁸

『강계고』와 『동국문헌비고』의 대마도 주장은 뒤에도 이어진다. 『춘관지』 수정본을 작성하였던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은 『정헌쇄록(貞軒瑣錄)』에서 등원석(鄧元錫)의 『경세실용편(經世實用編)』에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기록이 있어 의심을 했는데 세종이 조말생에게 명하여 대마도주에게 효유하는 말에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이 있어 등원석의 말이 믿을 만함을 알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⁷⁹

3) 서해의 남쪽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서해안의 해안 가운데 남쪽의 해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해남(海南) 명양(鳴洋)의 서쪽에서부터 부안(扶安)에 이르기까지는 북쪽을 향하여 가다가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지고, 만경(萬頃)에서부터 서산(瑞山)에 이르기까지는 북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뻗어 나가 서산에서부터 동쪽을 향하다가 꺾어져 돌아서 홍주(洪州)의 대진(大津)에 이르고, 수원(水原)에서 북쪽을 향하다가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져 통진(通津)의 조강(祖江) 남쪽에 이른다. 지면이 바다에 깊숙이 들어간 곳은 해남의 우수영(右水營)과 등산곶이(登山串), 영광(靈光)의 망운(望雲), 무안(務安)의 해제(海除), 홍주(洪州)의 흥양(興陽),

78 『동국문헌비고』 권19, 「여지도」 14, 관방 4, 해방 2 남해, 2b~4a.

79 『정헌쇄록』, 대마도, 『근기실학연원제현집』 2, 2002, 대동문화연구원, 561쪽.

태안(泰安)의 군(郡) 전체와 군(郡)의 안흥량(安興梁)의 남북 2면(面), 서산(瑞山)의 대산곶이(大山串)이다.⁸⁰

서해의 남쪽 해 가운데 도서로 제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고 있다. 부속 도서뿐만 아니라 제주 내의 군현까지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사』 「지리지」를 인용하면서 제주로 가는 뱃길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 말하기를, “대개 탐라로 가는 자들은 나주(羅州)에서 출발하여 무안(務安)의 대곶포(大掘浦), 영암(靈岩)의 대무지(大無只)·와도(瓦島), 해남(海南)의 어란량(於蘭梁)을 거쳐서, 7주야를 가면 추자도(楸子島)에 이르고, 해남(海南)에서 출발하면 삼촌포(三寸浦)를 따라 거요량(巨要梁), 삼내도(三內島)를 거쳐서 가고, 강진(康津)에서 출발하면 군영포(軍營浦)를 따라 고자(高子), 황이(黃伊), 노솔도(露瑟島), 삼내도를 거쳐 모두 3주야를 가면 추자도에 이른다. 위의 세 곳의 배들은 모두 추자도를 경유하여 사서도(斜鼠島)와 대화탈도(大火脫島), 소화탈도(小火脫島)를 지나서 애월포(涯月浦)에 이른다. 조천관(朝天館)과 화탈도(火脫島) 사이에서 두 물길이 교류(交流)하여 파도가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왕래하는 자들이 다니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다.⁸¹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체찰사(體察使) 유성룡(柳成龍)의 자연을 칭하는 상서, 각 도서를 연결하는 방비 체계의 구축을 칭하는 민진원의 연해 방수책을 적고 있다. 이 역시 서해의 남쪽 여러 도서들을 해양관방의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서해의 북쪽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서해의 북쪽 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80 『동국문헌비고』 권20, 「여지교」 15, 관방 5, 해방 3, 서해지남, 1a~b.

81 『동국문헌비고』 권20, 「여지교」 15, 관방 5, 해방 3, 서해지남, 3b~4a.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외 · 도서 인식

의주(義州)의 미라산(彌羅山) 남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향하여 안주(安州)의 노강(老江)에 이르고, 노강의 남쪽에서부터 서남쪽으로 향하여 비스듬히 뻗어나가 장연(長淵)에 이르며, 장연에서부터 꺾어져 동남쪽으로 향하다가 강령(康翎)에 이른다. 강령과 배천(白川)은 서로 마주치는 곳인데, 조금 북쪽이 배천이며, 배천에서부터 동쪽으로 향하여 벽란도(碧瀾渡)를 건너서 비스듬히 동남쪽으로 뻗어나가 풍덕(豐德)의 조강(祖江) 북쪽에 이른다. 지면이 깊숙이 바다로 들어간 곳은 장연(長淵)의 장산곶이(長山串), 해주(海州)의 흑두(黑頭), 용진(龍津)의 저작(底作), 강령(康翎)의 등산곶이(登山串)이다.⁸²

『동국문헌비고』에서는 모문룡(毛文龍)에 의해 점령당했던 가도(槓島)를 관심 있게 적고 있다. 가도조에서는 광해군(光海君) 13년(1621) 진강성 함락 이후 모문룡이 가도에 부(府)를 개설하고 동강진(東江鎭)이라 부르면서 점령한 모습을 적고 있다. 이후 모문룡이 서해 북쪽 일대에 진을 설치하고 횡행하다가 요광 경략(遼廣經略) 원숭환(袁崇煥)에 의해 죽고 이어 유흥치의 난(亂)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소개하였다. 이에서는 모문룡의 점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볼 수 있다.

서해 북쪽이 여러 도서를 정리한 다음 고려 우왕(禑王) 14년(1388)에 서해도관찰사(西海道觀察使) 조운홍(趙云弘)이 도서를 다시 열어 줄 것을 청하는 상서, 체찰사 유성룡의 서해에 대한 개발 주장, 체찰사 이항복(李恒福)의 백령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 방어책을 소개하였다.⁸³

이상의 조선을 둘러싼 삼면의 바다와 북쪽의 강안에 대해 『동국문헌비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상의 동·서·남 삼면의 연해 지방(沿海地方)은 모두 1백 28 고을인데, 육지 관부의 거리로 계산하면, 총계 8천 43리이다. 동쪽 연안에서 남쪽에 이르

82 『동국문헌비고』 권21, 「여지고」 16, 관방 6, 해방 4, 서해지북, 1a~b.

83 『동국문헌비고』 권21, 「여지고」 16, 관방 6, 해방 4, 서해지북, 12a~15b.

고, 남쪽 연안에서 서쪽에 도달하고, 서쪽 연안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조강(祖江)을 거쳐 서울에 도달하고, 서쪽 연안의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오는데도 역시 조강을 거쳐 서울에 도달하므로, 조강은 곧 서울로 통하는 수로가 모인 곳이다.⁸⁴

그리고 조선이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인식하면서 북쪽의 압록강과 두만강의 연안을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압록강 연안 : 갑산(甲山)의 혜산강(惠山江)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갑산(甲山) 1백 60리 삼수(三水) 2백 35리 폐사군(廢四郡) 5백 60리 강계(江界) 1백 66리 위원(渭原) 1백 33리 초산(楚山) 83리 벽동(碧潼) 2백 22리 창성(昌城) 86리 삭주(朔州) 68리 의주(義州) 2백 60리(이상은 함경도가 2고을, 평안도가 7고을인데, 폐사군(廢四郡)까지 합하여 총계 2천 3백 3리이다. 혜산(惠山)에서 백두산(白頭山)의 수원지(水源池)까지는 3백여 리이다.]

두만강 연안 : 무산(戊山)의 삼산사(三山社)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무산(戊山) 3백 55리 회령(會寧) 96리 중성(鍾城) 1백 16리 온성(溫城) 71리 경원(慶源) 1백 15리 경흥(慶興) 91리(이상은 함경도의 6고을인데, 총계 8백 44리이다. 삼산사(三山社)에서 백두산의 수원지까지는 3백여 리이다.]

두 강의 연안은 총계 2천 8백 77리이다. 압록강의 상류인 혜산강(惠山江)에서부터 동쪽으로 두만강 상류까지의 사이는 1백 20리이다. 삼면 바다의 연안과 두 강의 연안은 총계 1만 9백 20리이다.⁸⁵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유교 사상과 중화주의가 지배하면서 상대적으로 국경의 개념이 미약했으나 숙종 대의 조·일, 조·청 간의 국경 충돌 이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북쪽의 압록강, 두만강 두 강의 경계 지역과 남쪽

84 『동국문헌비고』 권21, 「여지고」 16, 관방 6, 해방4, 15a.

85 『동국문헌비고』 권21, 「여지고」 16, 관방 6, 해방4, 15b.

의 삼면 바다와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동국문헌비고』에서도 강화된 영토의식 속에서 삼면의 바다를 보고 있다. 이러한 영토에 대한 자각에서 후일 울릉도 개척령 반포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규정한 고종의 칙령이 나오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동국문헌비고』에서 보이는 해안과 섬에 대한 인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안과 도서에 대한 정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V. 『증정문헌비고』 「조빙고」와 「병고」 변금조의 편찬

『동국문헌비고』의 해로와 도서에 대한 인식은 국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섬과 포구에 대한 인식도 소개에 그칠 뿐 위기가 고조되는 해안 방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방비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증정문헌비고』에서는 「조빙고」와 「병고」 변금조가 추가되었다. 비록 『증정문헌비고』는 1782년 정조의 명을 받아 이루어진 재편찬 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만 이는 이양선의 출몰 등 외부 세력의 등장에 따른 위기의식과 폐사군 지역 개발 등에 따른 고조된 강역의식의 결과였다.⁸⁶ 여기서 이 조항의 추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빙고」의 편찬

『동국문헌비고』가 나온 1770년 이전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민족을 포함한 세계사로 이수광의 『지봉유설』, 허목(許穆)의 『동사(東史)』, 홍여하의 『휘찬여사』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유사류의 형태이거나 화이적 시각에서 외국

86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된 지 12년 만에 수정작업에 착수하게 된 시대적, 학문적 배경과 강역 인식에서의 변모 양상은 박인호, 1996, 앞의 책, 제3장 이만운의 『증정문헌비고』 「여지고」 참조.

을 다룬 것이다. 1760년경에 만들어진 이돈중(李敦中)의 『동문광고(同文廣考)』가 당시 가장 자세한 세계사 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⁸⁷ 이 책도 서구 사회에 대한 인식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조선 지식계의 한계는 『동국문헌비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동국문헌비고』에서 우리나라의 역대 국계와 군현, 산천에 대한 정리는 하였으나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로조에 해외 해로를 설명하면서 공물을 바친 기록 속에 외국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⁸⁸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외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인식의 부재를 보이고 있다.

『동국문헌비고』 해로에서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교류 기록이 부실하다고 여긴 이만운(李萬運, 1723~1797)은 『증정문헌비고』 해로조에서는 『동국문헌비고』 해로에 대한 부분만 남기고, 별도로 「조빙고」 항목을 추가하여 중국과 일본의 해로를 포함한 교류 관계 기사를 수록하였다.⁸⁹ 다음 〈표 3〉은 이만운에 의해 추가된 『증정문헌비고』 「조빙고」의 항목과 내용을 정리 하되 뒤에 나온 『증보문헌비고』 「교빙고」와 비교한 것이다.⁹⁰

87 노태돈, 1995, 「18세기 사서에 보이는 세계사 인식체계」, 『규장각』 15; 노태돈, 1998,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88 『동국문헌비고』 권22, 「여지도」 17, 판방 7, 해로, 10a~b.

89 『증정문헌비고』 권107, 「조빙고」 10, 역대교빙 2.

90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조빙고」에서 「교빙고」로 넘어가는 단계를 매우 잘 알 수 있는 책자가 있다. 『東國歷代朝聘考』(k2-3473)라는 제하의 필사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증정문헌비고』 「조빙고」를 먼저 필사한 다음 「교빙고」의 변경 내용을 교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교빙고」를 편찬하면서 「조빙고」의 바탕 위에 변경되는 부분을 붉은 색으로 처리한 것이다. 없애야 하는 것은 붉은 선으로 수정처리하거나 한 단락을 모두 없앨 때는 상단에 붉은 점을 찍었다. 『증정문헌비고』 단계에서 덧붙여 놓은 속의 내용은 별도의 종이를 끼워 넣어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이때 한 장에 실수하여 번호가 잘못되기도 하였다. 제목에서 이전의 '朝覲'이라는 표현이 수정되지 않은 점은 『증정문헌비고』가 완성된 직전의 교열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종 인쇄단계에서 조빙고가 교빙고로, 역대조빙이 역대조빙으로 수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증정문헌비고』가 어떻게 『증보문헌비고』로 수정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한편 규장각에 이와는 반대로 『증보문헌비고』 「교빙고」를 기준으로 『증정문헌비고』에서 누락된 구절을 별도로 정리한 『朝聘考抄』(奎 15588) 제하의 책도 있다. 이는 『증보문헌비고』 「교빙고」 편찬에 관련된 이가 『증정문헌비고』 「조빙고」와 비교하여 누락된 구절만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로·도서 인식

(표 3) 『증정문헌비고』 「조빙고」와 『증보문헌비고』 「교빙고」의 목차와 내용 비교

권	『증정문헌비고』 「조빙고」	수록 내용	권	『증보문헌비고』 「교빙고」	수록 내용
권98	朝聘考 1 歷代朝觀 1	• 단군에서 백제 의자왕 12년까지	권171	交聘考 1 歷代朝聘 1	• 단군에서 백제 의자왕 11년까지
권99	朝聘考 2 歷代朝觀 2	• 고려 태조 5년에서 강종 2년까지	권172	交聘考 2 歷代朝聘 2	• 고려 태조 5년에서 강종 원년까지
권100	朝聘考 3 歷代朝觀 3	• 고려 고종 6년에서 공양왕 4년까지	권173	交聘考 3 歷代朝聘 3	• 고려 고종 6년에서 공양왕 4년까지
권101	朝聘考 4 歷代朝觀 4	• 조선 태조 원년에서 명종 22년까지	권174	交聘考 4 本朝中國交聘 1	• 조선 태조 원년에서 인조 14년까지
권102	朝聘考 5 歷代朝觀 5	• 조선 선조 원년에서 인조 14년까지			
권103	朝聘考 6 歷代朝觀 6	• 조선 인조 15년에서 숙종 46년까지	권175	交聘考 5 本朝中國交聘 2	• 조선 인조 15년에서 숙종 46년까지
권104	朝聘考 7 歷代朝觀 7	• 조선 경종 원년에서 정조 8년까지	권176	交聘考 6 本朝中國交聘 3	• 조선 경종 원년에서 광무 8년까지
				附 韓淸通商條約	• 한침통상조약 추가
권105	朝聘考 8 附 僨接 附 朝聘雜儀	• 고려 현종 2년에서 숙종 7년까지 사신 교환 • 사신 교환 예식 • 사행과 방물 • 渡江後接待節次 • 中原進貢路程 • 辛酉以後航海路程 • 卽今中原珍貢路程	권177	交聘考 7 附 僨接 附 朝聘雜儀	• 고려 현종 2년에서 숙종 7년 사신 교환 • 사신 교환 예식 • 燕京路程 • 辛酉以後航海路程 • 後改燕京路程
47책 권106	朝聘考 9 歷代交聘 1 附 僨接 附 日本	• 신라 昔脫解에서 인조 7년까지 일본 사신 교환 • 사신 교환 예식 • 圖書式 • 日本使行과 別幅 • 일본 해로	권178	交聘考 8 日本交聘 1	• 신라 昔脫解에서 경종 2년까지 일본 사신 교환
			권179	交聘考 9 日本交聘 2 附 僨接日本 附 日本修好條規 附 條規附錄 附 韓日通商章程	• 영조 13년에서 광무 8년까지 교빙 • 사신 교환 예식 • 일본 해로 • 일본 수호조규와 부록 추가 • 한일통상장정 추가
권107	朝聘考 10 歷代交聘 2	• 유구, 섬라에서부터 삼국 교류	권180	交聘考 10 歷代各國交聘	• 유구, 섬라에서부터 삼국 교류
			권181	交聘考 11 泰西各國交聘	• 태서 각국 교빙 추가

				권182	交聘考 12	附 韓美條約 附 各國條約 同異合編 附 各約附續 通商章程 附 善後續條	• 각종 조약 추가
				권183	交聘考 13	附 韓俄陸路 通商條約 附 韓奧修好 條規	• 각종 조약 추가

『증정문헌비고』 「조빙고」 역대조근에서는 단군에서부터 정조 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교섭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역대조근에서는 역대 각국과의 교빙에 대한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활발한 대외교류의 모습을 적고 있다. 이에는 고려와 조선의 유구국과 섬라국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각국과의 조빙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나라별 교류 대상국을 열거하였다.

〈표 4〉 『증정문헌비고』 「조빙고」 역대조근 내 조빙 국가

국가	조빙 국가
新羅	馬韓, 東沃沮, 貊國, 加耶國, 音汁伐國, 高句麗, 百濟, 北國, 渤海, 高麗
百濟	馬韓, 樂浪, 靺鞨, 新羅, 高句麗
高句麗	扶餘, 黃龍國, 肅慎氏, 北燕, 突厥, 新羅
甄萱	吳越
新羅, 百濟, 高麗	耽羅
高麗	黑水靺鞨, 甄萱, 佛奈國, 渤海, 芋陵島, 大食國, 鐵利國, 東女眞, 江浙省, 淮南省, 雲南, 台州, 杭州, 江浙海島防禦, 納哈出.
朝鮮	久邊國, 兀狄哈
高麗, 朝鮮	琉球, 暹羅

빈집은 왜국 사신의 접대에 대한 것인데 이맹휴가 『첩왜역년고』를 집필 하였던 점에서 본다면 빈외의 많은 부분은 이맹휴의 책에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증정문헌비고』에서는 해외조를 재편하고 별도로 「조빙고」를 독립시켜 편찬하였다. 이는 『동국문헌비고』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에 비하면 세계를 향한 새로운 각성을 의미한다.

2. 「병고」 변금조의 편찬

『증정문헌비고』에는 「병고」 변금조가 새로 편성되어 들어갔다.⁹¹ 이는 『동국문헌비고』에 없던 조항이다.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여지고」 관방조에 국경에 관한 일부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변경의 방어라는 관점에서 들어간 부분은 없다. 『증정문헌비고』 「병고」 변금조는 이만운이 군사적 관점에서 육상과 해상의 방어를 정리하면서 「병고」에 새로 편성해 넣은 것이다.⁹² 그리고 변금조는 당시 국경 경계에 대한 고조된 관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증정문헌비고』 「병고」 변금에서는 신라, 백제, 고려, 조선의 순으로 변경 지역에서의 동향을 적고 있다. 신라는 시조, 파사왕, 눌지왕, 흥덕왕, 문성왕 대의 변경 침략과 진의 설치를 적었다.⁹³ 백제는 시조, 구수왕, 진사왕, 무령왕 대의 성채와 관방 설치를 적었다.⁹⁴ 고려는 국초부터 여진, 거란 등과의 다툼을 적고 있다. 정종 이후는 동서 여진과의 교섭에 대한 기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고려 성종 10년의 “압록강 외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쫓아냈다”고 적거나 성종 12년 “소손녕이 와서 국경에 대해 다투었다”는 기사는 이만운이 채

91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92 『증정문헌비고』 「병고」 변금조와 그 뒤에 나온 『증보문헌비고』 「병고」 변금조를 비교하면 대체로 『증보문헌비고』에서는 1/50이 삭제되었다. 『증정문헌비고』 편찬 단계의 고조되었던 영토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93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1a~b.

94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1b~2a.

택한 것이겠지만 강역에 대한 고려인들의 인식을 보여 준다.⁹⁵ 『동국문헌비고』에서 고려 강역에 대한 역대 국계의 안설에서 서북은 압록강에 이르렀으나 동북의 경계는 지금 정평(定平)의 도련포(都連浦)로 보았다.⁹⁶ 이러한 강역에 대한 인식은 『증정문헌비고』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윤관의 구성 획득과 회부에 대해 별도로 비판적인 글을 추가하고 있다.

예종 3년(1107)에 윤관(尹瓘)이 땅을 넓혀 공험진(公嶮鎭)에 비(碑)를 세우고 선춘령(先春嶺)으로 경계를 정하였다.(여지고에 상세히 보인다.) 윤관이 제군에 명하여 내성의 재목과 기와를 거두어 구성(九城)을 쌓게 하니, 병마사(兵馬使) 김한충(金漢忠)이 옳지 않다고 고집하여 말하기를, “만일 외성의 일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급한 사변이 있으면, 안에는 완전한 성이 없는데 백성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원수가 명하더라도 나는 감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뒤에 마침내 그 말과 같이 되었다. 예종 4년(1109)에 의논하여 구성을 돌려주었다.⁹⁷

예종 대 이후 금(金)과의 기록이 등장하여 고종 대까지 이어진다. 이어 동진국, 몽고, 원의 침략과 교섭을 적고 있다. 한편 공민왕 15년 기사에서는 왜구 관련 기사가 등장하여 북방 강역뿐만 아니라 남방의 해안이 가지는 위기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고려 말에는 납합출(納哈出), 명 철령위(鐵嶺衛), 올랑합(兀良哈), 오도리(幹都里) 등의 교섭 기사도 같이 등장한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북방의 방비뿐만 아니라 해상 혹은 도서 관련 기사가 다수 등장한다. 먼저 북방 방비와 관련된 것으로 회령, 여연, 무창 등지에 출

95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3b.

96 『동국문헌비고』 권7, 「여지고」 2, 역대국계 2, 31a~b.

97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9a~b.

『증정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외 · 도서 인식

몰하던 아인들을 구축하거나⁹⁸ 압록강의 신도(新島)⁹⁹와 위화도(威化島),¹⁰⁰ 난자(蘭子) 체자(替子) 2도¹⁰¹ 그리고 두만강의 녹둔도(鹿屯島)¹⁰² 등과 압록강에 인접한 조산평(造山坪), 설함평(設陷坪),¹⁰³ 서해평령(西海坪嶺),¹⁰⁴ 고미평(古米坪),¹⁰⁵ 방산진(方山鎭)¹⁰⁶ 등에 중국인들이 들어와 경작하므로 중국 관헌과 함께 퇴거토록 조치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선조 이후부터 인삼과 관련하여 율강하는 사례가 대폭 증대하면서 이에 대한 구축 기사가 계속 이어진다. 인조 대 모문룡 관련 기사와 숙종 대 백두산 정계 관련 기사도 수록되어 있다. 이만운이 이러한 기사를 수록한 것은 나라에는 강역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¹⁰⁷

한편 도서와 관련해 다수의 기사도 수록되어 있다. 울릉도(鬱陵島)는 포민들의 추쇄 관련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¹⁰⁸ 대마도(對馬島)는 세종 대의 정벌이나 명종 대의 약조체결 등 교린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¹⁰⁹ 해랑도(海浪島)는 포민 혹은 무적지민들의 추쇄와 관련된 기사를 적고 있다.¹¹⁰ 의죽도(礮竹島)의 경우 광해군 대 일본이 탐사를 청하였으나 거절

98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20a~b(중종 13년, 중종 18년).

99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21a(중종 25년), 22a(명종 8년), 24b(선조 11년), 27a(광해군 3년)

100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21a~21b(중종 연간), 25a(선조 20년)

101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25b(선조 연간).

102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25a(선조 21년).

103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21b~22a(중종 35년 조산평, 명종 5년 설함평), 23a(명종 15년 설함평, 명종 17년 설함평), 24b(선조 15년 설함평, 선조 16년 조산평), 25a(선조 17년, 선조 18년 조산평).

104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23b(선조 원년).

105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23b(선조 2년).

106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24a(선조 6년).

107 만주족이 몰래 철산성에 들어왔을 때 감사 민성회가 한 “國有疆域”이라는 말은 이만운이 변금조를 설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108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17a(태종대 按撫使 金麟雨 파견, 세종대 萬戶 南顯 파견).

109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16a~b, 17a, 21b.

110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20a(연산군 6년), 27a(광해군 3년).

한 기사를 수록하였다.¹¹¹ 울릉도의 경우 안용복 사건 이후에는 그 대응책으로 3년에 1번씩 거주 실태를 조사하는 원칙을 마련하였음을 적고 있다.¹¹² 한편 경종(景宗) 이후에는 황당선(荒唐船)의 출몰에 따른 대비책이 논의되었다.

변금조는 이만운이 국방 경계에 대한 사건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다. 조선은 상대적으로 국경에 대한 관념이 시간적 추이에 따라 점점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압록강, 두만강 이남의 평안도 오지와 백두산 일대에서 경작이나 인삼 채취를 위해 들어오려는 중국인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은 이곳이 우리의 강역이라는 확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¹³ 이 점은 해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압록강 일대의 신도, 위화도와 두만강의 녹둔도, 그리고 서해의 해랑도, 동해의 울릉도 등지에서는 해적과 왜구를 퇴출시킨 기록들을 나열하고 있다. 변금조는 우리의 강역을 군사적 측면에서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서 기술된 것이다.

VI. 맺음말

이 논문은 『동국문헌비고』에서 보인 우리나라의 강계에 대한 인식과 해로와 도서 인식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된 것은 울릉도에서 산출되었던 인삼과 관련된 문제에서 촉발되었다. 울릉도에서 인삼이 산출되는 것을 왜인들이 알게 될 경우 분쟁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문건을 정리하는 데서

111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27b(광해군 7년).

112 『증정문헌비고』 권136, 「병고」 13, 변금, 32a(숙종 19년).

113 영조대 『동국문헌비고』의 북방 지역에 대한 위기의식은 정조대 『증정문헌비고』, 『군국총목』, 순조대 『만기요람』의 편찬으로 이어진다.

출발하고 있다. 영조는 신경준의 『강계고』를 보고서 우리나라의 강역, 관방, 산천, 도리 등을 다룬 책을 편찬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나라의 각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는 백과전서의 형태로 편찬되었다.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조선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산천과 도로에 대한 정보를 주제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 편찬된 전국 지리지에서는 각 군현 단위로 분산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동국문헌비고』는 백과전서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산과 강, 그리고 도로에 대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 책의 편찬 목적이 국가가 전국을 제일적(齊一的)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해방조와 해로조의 기술은 당시의 해로와 해방 체계의 실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해안 방면에서의 위기의식이 해방조의 편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안 해로에 대한 지식은 대외적인 위협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도서 지역에 대한 기록은 『동국문헌비고』 해방조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도서 지역과 섬을 해안 방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가운데 울릉도, 대마도, 가도는 특별하게 장문의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섬들은 일본, 중국과 국경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해안 지역에 대한 해방조의 문제의식은 「병고」의 주사조에도 관철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에서 보이는 해안 도서에 대한 인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안과 도서 지역에 대한 정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국문헌비고』의 해로와 도서에 대한 인식에서는 국내 사정을 적은 것에 머물러 해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연안 지역 섬과 포구에 대한 소개에 그칠 뿐 방비에 대한 군사적 인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증정문헌비고』에서는 외교적 측면의 「조빙고」와 군사적 측면의 「병고」 변금조가 추가되었다. 『동국문헌비고』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에 비하면 『증정문헌비고』에서 「조빙고」와 「병고」 변금조가 별도로 추가된 것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각성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 강역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서 군사적 방비를 촉구한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錦帶殿策』.
『東國歷代朝聘考』.
『東國文獻備考』.
『東文選』.
『東史綱目』.
『備邊司謄錄』.
『仙槎志』.
『星湖僊說』.
『星湖集』.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旅菴全書』.
『英祖實錄』.
『頤齋亂藁』.
『貞軒瑣錄』.
『朝聘考抄』.
『朝野記問』.
『增補文獻備考』.
『增訂文獻備考』.
『青城雜記』.
『春官志』.

2. 단행본 및 논문

- 김문식, 2007, 「춘관지 필사본의 원문 비교」, 『성호학보』 4.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로·도서 인식

- 노태돈, 1995, 「18세기 사서에 보이는 세계사 인식체계」, 『규장각』 15.
_____, 1998,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박인호, 1996, 『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문화사.
신익철, 2009, 「신경준의 국토지리관과 해로·선박에 대한 인식」, 『한국한문학연구』 43.
이근호, 2016, 「18세기 중반 동국문헌비고 ‘해방’조 편성의 역사적 의의」, 『한국학논총』 46.

국문초록

이 논문은 『동국문헌비고』에서 보인 우리나라의 강계에 대한 인식과 해로와 도서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된 것은 울릉도에서 산출되었던 인삼과 관련된 문제에서 촉발되었다. 영조는 신경준의 『강계고를 보고서 우리나라의 강역, 관방, 산천, 도리 등을 다룬 책을 편찬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나라의 각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는 백과전서의 형태로 편찬되었다.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조선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산천과 도로에 대한 정보를 주제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의 전국 지리지에서는 각 군현 단위로 분산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동국문헌비고』는 백과전서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산과 강, 그리고 도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 책의 편찬 목적이 국가가 전국을 제일적(齊一的)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해방조와 해로조의 기술은 당시의 해로와 해방 체계의 실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해안에서의 위기의식이 해방조의 편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연안 해로에 대한 지식은 대외적인 위협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도서 지역을 해방조에 기술한 것은 섬을 해안 방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안 지역에 대한 해방조의 문제의식은 「병고」의 주사조에 관철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에서 보이는 해안 도서에 대한 인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안과 도서 지역에 대한 정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국문헌비고』의 해로와 도서에 대한 인식에서는 국내 사정을 적은 것에 머물러 해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증정문헌비고』에서는 외교적 측면의 「조병고」와 군사적 측면의 「병고」 변금조가 추가되었다. 이는 『동국문헌비고』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에 비하면 세계를 향한 새로운 각성을 의미하며 또한 우

리 강역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서 군사적 방비를 촉구한 것이다.

〈주제어〉

동국문헌비고, 증정문헌비고, 신경준, 해방, 해로, 여지고, 조빙고, 변금

ABSTRACT

The perception of Joseon, sea routes and islands in *Donggukmunheonbigo*

Park, In Ho

(Professor,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Joseon as a country, sea routes and islands shown in *Donggukmunheonbigo*.

The compilation of *Donggukmunheonbigo* was triggered by issues involving ginseng produced in Ulleungdo. King Yeongjo wanted to further develop *Ganggyeji*, authored by Shin Gyeong-jun, with the focus on territory, military defense facilities, mountains and rivers, and the length of roads. At the end, however, *Donggukmunheonbigo* was compiled in the form of an encyclopedia that summarizes various systems of Joseon.

In *Donggukmunheonbigo*, information about counties and towns, mountains and rivers, and territories that comprise the Joseon Dynasty is categorized by theme and organized in a comprehensive manner. Previously compiled geography books of the country offered rather fragmented information about counties and prefectures, but *Donggukmunheonbigo* allowed its readers to easily find information about counties and towns, mountains and rivers, and territories while maintaining its characteristics as an encyclopedia. This shows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book was for the state to have the best understanding of the whole territory.

The descriptions in “Coastal Defense (*Haebang*)” and “Sea Routes (*Haero*)” in the *Donggukmunheonbigo Yeojigo* shows the reality of seaways and coastal defense at that time. The sense of crisis on the coast is expressed in “Coastal Defense (*Haebang*).” Also, the knowledge of coastal waterways is a warning against external dangers. Information about islands is contained in “Coastal Defense,” because the book treated the islands in the context of coastal defense. In addition, the critical perception of coastal areas in “Coastal Defense” is maintained in “Naval Force (*Jusa*),” Byenggo. It is fair to say that the awareness of the sea routes and islands “Coastal Defense” is an introduction to the coastlines and island areas of the country.

The perception of sea routes and islands shown in *Donggukmunheonbigo* lacks insights on any foreign affairs. To close this gap, diplomatic aspects were added in *Jobinggo* and “Frontier Guard (Byeonkuem)” of *Byenggo* included information about military affairs in *Jeungjeongmunheonbigo*. That is, considering the lack of interest in other countries shown in *Donggukmunheonbigo*, what *Jeungjeongmunheonbigo* introduced was a new awakening to the world and a call for military defense, all aimed at protecting the territory.

『동국문헌비고』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해로·도서 인식

Keywords

Donggukmunheonbigo, *Jeungjeongmunheonbigo*, Shin Gyeong-jun, Coastal Defense (*Haebang*), Sea Routes (*Haero*), *Yojigo*, *Jobinggo*, Frontier Guard (*Byeonkuem*)